

『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10월 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10월 12일

제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-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의 발굴·육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미시민장학회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장학회는 「민법」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(안 제2조)
- 장학회 임원의 구성과 선임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 -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
 - 이사장,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

- 장학회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 - 기금은 구미시의 출연금, 민간기탁금, 운용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
-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- 장학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구미시에 귀속토록 규정(안 제14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민법」 제32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
-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의 발굴·육성과 지역의 교육·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미시민장학회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구성은 총15조로 규정하였음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장학회 설립방법, 임원구성 및 기금의 조성방법, 사업범위 및 기금출연, 공무원 파견, 잔여 재산의 귀속 조항 등을 규정하면서
- 장학회는 「민법」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토록 규정하고
- 장학회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며, 이사장과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임기 등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

- 기금조성은 구미시의 출연금, 민간기탁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음
- 장학회 사업으로는 우수학생 인재육성 장학사업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이며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
- 장학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구미시에 귀속토록 하는등 설립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임

○ 조례안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·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미래인재 양성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
- 기 운영중인 각종 장학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과의 차별화 시책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금출연의 다변화 전략을 동시에 강구 되어야함
- 앞으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조성 방법, 기존 유사 장학재단과의 운영문제, 장학사업 목적이 적정한지의 여부, 시민장학회 설립의 실효성 여부 등을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